



## 군교도소 최악의 인권사각지대

—군대식 규율 그대로 적용—

<서영완>

1967년 충남 금산 출생  
86년 충남대 영문과 입학  
군-입대 후 89년 4월 17일 양심선언  
90년 4월 25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현재 대전교도소 수감중

“군대가 몽둥이 규율로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군 자체가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의 사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군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도 대립적인 존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깨어 져야 합니다.”

서영완 씨(25)는 군 복무중 89년 4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양심선언을 발표해 그해 4월 25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군인양심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양심선언을 했다가 구속 수감돼 있는 50여명의 군인양심수 중 한 명이다.

정역 1년 6월, 자격 정지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그가 육군복무 시절 파견근무 나와 말았던 일은 대북방송의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당시 문익환 목사가 방북 후 구속된 상황에서 대북방송은 비방일색으로 더욱 치달아야 했고 원고작성의 임무를 맡은 서씨는 방송원고를 쓰며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1심에서 형량이 확정된 후 그는 장호원(소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여기서 그는 군인양심수들의 인권상황의 열악함에 경악하고는 소내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 대개의 현역군인의 경우 실형 2년 이상 언도된 사람은 제대 후 일반교도소로 보내지만 국보위는 형량에 관계없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장호원에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일반교도소로 보내진다.

서영완 씨는 장호원에 6달 동안 수감돼 있었다. 그 안에서는, 일반교도소에서 가능한 책 반입, 신문구독, 면회는 물론 영치금이나 영치품 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

저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도 갈증을 없애줄 물 한모금 안넣어주기 일쑤고, 구타나 폭언, 욕설을 듣는 것이 일상사였다.

서 씨는 군대식 규율이 교도소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며 소내

인권문제를 제기, 3번의 농성을 했다. 그러나 증무장된 현병대 교도대에 의해 강제해산됐음은 물론이고 '주동자'들은 '독거창'이라고 부르는 징벌방에 갇히게 된다. 징벌방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 서 있을 정도의 비좁은 공간에서 2시간씩 일주일간 가둬두는 곳. 높이가 1m 70cm 정도되는 이곳에는 바닥에 모래가 깔려 들어가 있으면 몸이 구부러지고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곳이다.

6달 후 서 씨는 대전교도소로 이감돼 일반양심수들과 같은 처지가 됐지만 편지왕래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도소 측에서는 발송했다고 하지만 두 통에 한 통 꼴로 편지가 분실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느 양심수들처럼 서영완 씨도 수감생활을 자신을 되돌아 보고 사회활동을 평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인권운동과 연결된 실천의 한 영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지정수신인 : 인권운동사랑방

수신 : FAX/8227968366(인권운동사랑방)  
 발신 : !KR/DACOMPHS/CHOLLIAN//GYUSUN  
 송신 시각 : 94/09/28 13:29  
 수신 시각 : 94/09/28 14:27  
 메시지 ID : 0000003978  
 제목 : 서울구치소 재소자 집단식중독  
 송신자 : GYUSUN (남규선)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사료번호
9. 28. 0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3-2660 FAX 745-5684

## 서울구치소 재소자 통닭먹고 집단식중독 걸려

1. 서울구치소에서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추석특식으로 판 통닭(구매가 6천원)을 먹은 서울구치소 재소자 58여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렸다.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은(서울구치소 수용인원 3천5백명) 추석전날인 19일 통닭 3천마리를 구매했는데 이중 1천2백마리가 썩었고 금팡이가 끼어있었다. 또한 통닭 포장지에는 제조일자 와 제조원, 제조회사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은 책임자 문책, 진상조사 및 진상규명, 교도소장 공개사과, 식중독 환자 치료를 요구하며 26, 27일 양일간 집단농성을 벌였다. 또한 23일과 26일 재소자 대표 3인은 교도소장 면담을 통해 책임자 문책, 진상규명, 교도소장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교도소측은 재소자들의 집단항의가 거세지자 27일 오후 서무과장이 재소자들에게 사과하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발표하며 서둘러 이 문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3. 서울구치소 통닭사건은 우리의 재소자 인권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통닭사건은 교도당국이 재소자의 건강은 외면한채 이윤을 챙기기 위해 싼값의 불량식품을 들여오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누적되고 감춰졌던 교도소 비리가 일부 드러난 어이없는 사건으로 교도행정의 부패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4. 국회는 서울구치소 국정감사에서 이번 통닭사건을 비롯해 교도소 비리문제를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사회의 '감시' 밖에 있는 교도소행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소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형법을 개정해 교도소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벗고 진정한 교정, 교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994. 9. 2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육군 기독교 내의 수련생 (수행자) 의 생활실상

① 수련생과 교도관 및 근무자 (헌병) 의 관계

○ 교도관과의 관계 : 교도관이라 하면 교도소에 수형되어있는 사람을 교도 교화에 노력하러있는 것이 주임무이다. 하지만 이 교도관들은 수형자의 대우 문제가 있어서 인격적 존재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사물의 본질 또한 사물로 본다

그러하여 수형자들의 리콜한 잘못 (범죄자외의 사소한 다름) 을 가지고 신랄한 비판과 심판의 말을 안듯는 등등들을 우리에게 가슴이 들끓는 것과 같이 독저독저라는 시각은 어떤 제대로 볼수도 알수 없었듯이 헌병이 아닌 수형생 전이되어 두시간내지 많으면 네 시간 정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바르 수형자를 인간이 아닌 동물로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을 해서 교도관과 수형생과의 사이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대두 되었었다

○ 근무자와 수형생과의 관계 : 근무자들은 주먹을 맞아 헌병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수형생과의 차이가 거의 같은 단위로 특히 더 정숙한 복속하는 것까지 수형생과는 별 다른 다름이 없다. 하지만 몇몇 근무자들을 신랄한 비판과 심판을 일삼는 근무자도 있기에 가끔씩 다름이 일어나곤 한다

② 교도소 내의 배식문제 및 급수 그리고 기동교육장의 허와실 보충문제

○ 배식문제 : 영구 간부들은 수형생들에게도 근무자 즉 일반 군인 등과 같은 강은 배식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밥은 기동장도 이해가 간다 (정리정돈 나쁜건) 그러나 반찬과 특의 배식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이다

반찬을 먹을 때 군에서는 식판으로 두가치가 나온다 김치와 기남 매운게 따라 따라

일반병들은 반찬량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있을 때 나오는데이다



장악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교장에서는 수확이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손가락절단, 허리부상 등 수확이 많은 사고에 대하여 기교과량 비례한 기계들은 또한 안전성으로 생활한다. 수확성이 다른 많은 시종을 전혀 안쓰고, 2년 무중음에 사고가 발생될까? 물론 부족의하여 사고는 사고도 있다. 그렇지만 작업 환경을 살펴보면 이정도 이하가 갈 것이다. 옛날 구기계에다 작업복을 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날카로운 장원을 움직이는 경우 이쁘리 주의해도 손가락등 온몸에 상처가 입기 바쁘다. 특히 작업할 때 들은 가운뎃을 넣는 작업복이 없기에 들은 세대를 하리안 계속 입고 작업하므로 수확 운동 피로가 걸려 고생하는 수확성이 많다. 이같은 위생 상태에서 이쁘리 말을 할수있겠다.

• 보급물문제: 일반적으로 3시간을 이라고 하면 비누, 리튬, 리튬, 수돗 등이다

수돗은 일수할때 편이 3개 전방 3개는 내린다. 그리고 비누, 리튬은 한달에 1개 리튬 석달에 1개 리튬은 두달에 1개 (1/500) 나온다. 하지만 이것으로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비누가 비누 1개도 수돗 및 리튬, 리튬전극, 작업복, 전방, 식기등을 다야야 하는데 보통 한달에 두개 정도는 들어간다. 리튬은 2개 500m 리튬 이리만하면 부족하다. 사람이 예전 400 수돗 리튬이 강기가 걸리면 리튬이 나오기 바쁘다. 그걸 따오며 리튬은 500리튬에서 20일 사기에 안되겠다.

이런비율이 수리생활은 고수 후에 리튬을 요구 하리라한 리튬 당했다. 수돗달한 3번에서 부족하다. 이년 아 일년 67%를 3번 가리하는 이리도 안

→ 90 1. 14 쪽짜리 리튬가능 34 점

○ 육군 고수내의 특징현황

• 이곳간부들은 특색을 특색이라고 한다

• 일차 특색: 90년 2기 이윳: 기교장 사고 다발: 배식, 보급물 문제  
 경과: 3중의 단독 특색으로 시계단식함 혐의를  
 경과: 혐의사항 이주여러 많은 가항자 징계 처벌 및  
 가석방 제한

1. 생활에 대한 생활

징계 처벌 및

결정된 리튬 문제

보급물 문제

의하여

3. 징계 규정

가)

누가 제를

그다 당함

항을 요구함

같은 리튬이

리튬은

이리만하면

드행으로

이리도 안

기동기 리튬

수리생활

장비 문제

말씀 그다

특색을 처벌

제 조사를

• 이차투쟁: 90년 5월

이유: 일광복사간 연속복 극보위 수련 생활에  
자율응답방 (쿠보위 및 강기수 등 방 생활)

경과: 일층에 단독투쟁으로서 실패

결과: 1층에 전방에 연희로 각종 징계처분

• 삼차투쟁: 90년 7월

이유: 집회 및 단체의 연속사건 해결 · 생활물리 및

경과: 1·2층에 투쟁으로서 네기 단식으로 대하

했으나 고도리쿠의 회와 빌고라에 의하여

실패 한의사할 많은 장

결과: 주보와 3층에 배방 및 투쟁 · 징계교역

받은 (특기투쟁 1주일, 하루 서사)

• 사차투쟁: 90년 12월

이유: 쿠보위 수련 생활방이 함도이웃서를 늦게 지를

했다는 이유로 단방을 부과하게 구다 당함

경과: 1층에 단독투쟁으로서 벽가리 사항은 인정

되만 자기 운동 및 벽대갈 투쟁은 지관대

의해 실패

경과: 1층에 다수가 다리고 쿠보위 수련 생활은

특수 등으로 배방 (징계처분 받은) (정전 생활)

• 오차투쟁: 91년 1월 12일

이유: 한 수련 생활에 대한 쿠보위의 반대행으로

인하여 대역상 할을 수 많았음

경과: 1·2·3층에 전 수련 생활이 왕자하여 고도리

쿠보위 자기 운동 야에 연희 및 기동기 화은

당함 용가기 조항을 받들이 전 수련 생활의

동의를 얻고 서명하여 고도리 강기수의

합의함

결과: 연속 및 생활물리권 · 보물수방 만등 그외

기회 고용상 · 주보와 서명을 특수 등 배방

불복을 일기 처리 되었다가 재조사중

## 무법천지 군 영창, 비민주 사회 한 단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과장이나 허식이 아니며 엄연한 사실과 진실한 마음의 표현 그 자체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거기에서 제가 겪었던 고통의 나날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배고픔과 추위와 끔찍스런 가혹행위는 가히 지옥이라 일컬을만 했습니다.

박창식(나라사랑청년회)

저는 89년 9월 10일 31사단 신병교육대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31사단 96연대 3해안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중 89년 11월 7일 보안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11월 10일 저녁에 31사단 헌병대 영창에 구속 수감되어 90년 3월 20일 육군 교도소에 이감되어 오기까지 130여일간을 31사단 헌병대 영창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31사단 헌병대 영창은 5개 분대(감방)로 나뉘어져 있으며 징계자를 포함하여 수감자가 보통 40명에서 60명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창근무는 근무자 2명이 1개조가 되어 2시간 간격으로 보통 4교대로 근무를 셧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행되었던 부당행위에 대하여 편의상 종류별로 나누어 서술하겠습니다.

### 첫째, 열차레 및 비인간적인 성추행

31사단 영창은 건물이 오래되어 매우 낡았으며 난방장치가 거의 없으며 하나 있는 온풍기를 작동하고 있어도 매우 추웠습니다.

작년 겨울 얼마나 추웠던지 저를 비롯 수감자 다수가 등상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그 추운날씨에 전체 수감자들에게 옷을 벗고 통로로 집합하라고 하여 수감자들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통로로 집합하면 온풍기를 끄고 창문을 다 열어젖히고는 5명씩 앞의 시멘트바닥으로 나오라 하고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자동적으로 수십회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추위와 극도의 공포심에 떨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반복하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하는 속도가 느리다며 찬물을 끼얹으면서 수감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것을 보며 근무자들까지 웃고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식의 열차레는 제가 영창을 떠나올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하여 졌습니다.

또한 성기 검사를 한다고 하여 수시로 옷을 발가벗기거나 혹은 성기만 내놓은 상태로 하여 성기를 까보라고 해서 더럽다며 때로고 놀리면서 씻으라는 등 성모욕행위를 빈번하게 자행하였으며 심지어 저와 같은 사건으로 수감중이던 수감자에게 자위행위를 하게끔

강요하였고, 또 새로 구속된 수감자가 소지하고 있던 콘돔에 물을 넣어 성기 형태로 부풀어오른 콘돔을 여러 수감자에게 입으로 빨도록 강요하자 보다 못한 다른 근무자가 이를 말리기도 했습니다.(중략)

그외에도 걸핏하면 30초이내에 옷 발가벗기와 30초이내에 다시 옷을 완전히 입기를 시켜서 늦으면 구타를 하거나, 나체PT제조 등의 수감자를 짐승으로 취급하는 가혹행위는 걸핏하면 이루어졌으며, 저희들은 이러한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행위를 당하고서도 근무자들의 폭력앞에 입을 닫고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 둘째, 근무자의 구타행위 일반화

먼저 제가 당한 가혹 및 구타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걸핏하면 이유없이 여러가지 열차레를 주어 한번은 제가 아무 이유 없는 열차레는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수감자 수칙을 의위보라고 했습니다. 수감자수칙 첫번째 내용이 "나는 근무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무단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으며, 제가 근무자의 명령에 복종 않는다며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수십차례 반복해 시켰으며, 그 후로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괴롭혔습니다. 한번은 철장앞의 직경 15cm 가량의 쇠기둥에 자기 머리를 스스로 부딪히고 도는 '양심박치기'를 10여차례 걸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한번은 철장문을 열고 군화발로 제 가슴을 세계 2차례 걷어 차서 가슴이 멍이 들고 며칠 동안이나 고생했으나 어디에 하소연도 할수 없었으며 이러한 것 외에도 뺨때리기, 목치기, 혹은 여러가지 심한 열차레등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될 정도로 수시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몇 회에 걸쳐 근무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거부를 하고 항의를 하며 나중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음에도 이경도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일반 수감자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심심하다며, 혹은 아주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아 수감자 2명이 1조가 되어 서로 마주보게 하고 각자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쪽 뺨을 큰 소리가 나도록 10분 내지 30분정도 계속 반복해서 때리게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 잠시 중지하면 근무자들이 직접 뺨을 때리고 때리는 소리가 작으면 시범을 보여 주겠다고 '철썩' 소리가 나도록 때리고는 그렇게 큰 소리가 나도록 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화장실 사용과 배식의 문제

인간이 아닌 짐승에게조차도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거기에서는 매일 아침식사후 4회에 걸쳐 대변을 다 보기 위해서는 45분 내지 1시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분 이내 짧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안에 대변을 다 보도록 할 수 없다면 각오하라고 하자 겁에 질린 수

감자들이 변기가 막혀 대변이 내려가지 않으면 막힌 것을 기구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손으로 대변을 주물러서 변기통의 막힌 것을 뚫게 하였으며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성기감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번은 김경운이란 수감자가 수양록에 "여기는 지옥과 같다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썼다가 들켜서 지옥과 같다 고 했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영창은 수감자중 50%정도가 동상, 변비, 습진, 무좀, 중기 등의 크고작은병에 걸려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와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식에 있어서도 양이 너무 적어 수감자끼리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일까지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배식량을 조금 밖에 주지 않는 등의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넷째, 31사 영창의 시설과 보급품 문제에 관하여 영창시설이 노후화되어 온풍기를 작동해도 추운데 걸핏하면 온풍기를 끄고 창문을 다 개방시켜 수감자를 추위에 떨게하고 온풍기가 고장나도 10여일간이나 고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화장지, 치약, 치솔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치 않아 접견시 영

창시설이 노후화되어 온풍기를 작동해도 추운데 걸핏하면 온풍기를 끄고 창문을 다 개방시켜 수감자를 추위에 떨게하고 온풍기가 고장나도 10여일간이나 고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화장지, 치약, 치솔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치 않아 접견시 영

창시설이 노후화되어 가랑 거기에 있는 동안 3회에 걸쳐 형식적인 소원수리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원수리서를 작성하기 며칠전부터 근무자의 소원수리서작성요령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괜히 엉뚱한 소리가 나오면 피차간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회유와 협박에 그제 그들이 가르쳐 준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기는 근무자들이 지배하는 절대왕국이었으며 수감자는 노예였을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보다는 더 더럽고 추잡한자들이 허위와 가식의 가면을 쓰고 도도하게 군림하고자 했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보면 구역질이 나려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절망과 공포만이 존재했을 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죄의식과 이런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데 들어오지마라는 권변과 괜히 대들었다가 두드러맞으면 자기만 손해라는 피해의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들면 재판시 꽤심죄작용하여 좋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 공갈에 그제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기만을 고대하는 무기력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이었을 뿐 감히 그러한 가혹행위에 대항할 엄두도 낼수 없으며 밖으로 이러한 것들을 전달할 통로조차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추운겨울 옷을 발가벗기우고 시멘트바닥에 눕게하니 나의 몸에 찬물을 쭉 끼었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던 그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백정의 얼굴을...

저는 그 추운겨울 옷을 발가벗기우고 시멘트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누워있을때 나의 몸에 찬물을 쭉 끼었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던 그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백정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며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31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창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행해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그 참혹한 곳에서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증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 추운겨울 옷을 발가벗기우고 시멘트바닥에서 추위에 떨며 누워있을때 나의 몸에 찬물을 쭉 끼었으며 재미있다는 듯이 웃던 그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백정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며 그때 내가 흘렸던 눈물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31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창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행해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그 참혹한 곳에서 고통속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글을 맺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증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먼저 양생하기가 앞서 다음이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각 사람 영혼이  
수용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결국 있는 것이 아니라 <sup>영혼</sup> 지식입니다.

박 강식 <sup>박강식</sup>

자신의 지가 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가정이나 정식이 아니며  
명백한 사실이다. 지의 지식한 마음의 표현 그 자체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거기에서 지가 겪었던 고통의 나락들.

산상한 수고와 없는 배고픔과 두려움과 광택스런 가족행위는 가히  
지식이라 일컬어만 가능합니다.

기억 해일 지는 지고한 두려움과 배고픔과 바깥과적인 대우등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야만 가능합니다.

아아 적이 등변사유로 영혼들이 등어리 전까지의 쫓긴 눈물의  
영혼다, 지사단 영혼에서 130일 동안에 흘린 눈물의 양이  
얼씬 양이 있습니다.

일찍해보면 지가 수고로써 "죽은 죽은 데기에서 흘린 눈물,  
너기에서인 고통을 잊지 안았다" 라는 생각등이 이리저리 생각다  
근위자가 그 빛을 쫓아바리고 다시 생각다를 하여 다시 새야 가능합니다.  
수고로써 고노고하를 목적으로 한다면, 수고의 도상이라는 그 영혼  
생존에서 지는 수고이나 인선은 지고 이 사내에 상하된  
영혼 사내적 모순을 더욱 정실히 느꼈을 뿐이며, 석방되었을때의  
삶에 대한 연가나 근면다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과 불의를 극복하여야  
가능한 고통과 고통을 다졌을 뿐입니다.

영혼 사내에서는 인위적일 줄지라도 인위적인 풍토를 인식하기  
위한 다양적인 노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에서는  
영혼에 발악적의 지인위적의 정본의상 목적의 승진이 아래  
구라정등 여러가지 사내에발 행등이 가능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목적의 가족행위가 존재하기에 자행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워 없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는 이러한 가족행위를 앞에서도 방지하거나 무산하고자도  
는 인위적의 역행하는 행위행위일 수 있다는 단박에 다시는  
이러한 시대적목적의 행위가 없도록 하는 바램에서 이를  
회개해야만 한다고 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89년 9월 10일 기사단 신병교육대에 양위병으로 임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기사단 96연대 중대반대에 배치되어 북부아프리카  
89년 11월 7일 보안대에 연행되어 기사를 받은 11월 10일  
저녁에 기사단 96연대 영감에게 귀속 수감되어 90년 3월 20일  
육군교도소에 이감처까지 1주여만 있을 기사단 편병대  
영감실에서 생활함을 전하였습니다.

기사단 편병대 영감은 6개 복대(장남)로 나뉘어져 있으며  
장계자를 포함하여 수감자가 보통 40명에서 60명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감실에는 근무자 2명이 1개씩이 되어 2시간 근무제로 보통  
4급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기감에 자립이었던 육군교도소에 대하여 개인이상  
특수병으로 나뉘어 서무하게 됩니다.

첫째, 비인간적인 신주검 및 모욕행위와 면대성육자의

반대행위는 신주검 행위의 일부 일차적으로 관하여 —  
기사단 영감은 권력이 모래처럼 더러워져 있으며 난방장치가  
거의 되지 않아 찬바람이 온풍으로 작동하고 있어 매우  
추운 것입니다.

각년 겨울은 극이나 추웠던지 저온 비를 수감자 모두가 경험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겨울이면 추위를 감당  
그 추운날씨에 전체 수감자들에게 옷을 벗고 통로로 걸러야하고  
같이 수감자들이 옷을 하나도 갖지 않은 상태로 통로로  
걸러야하면 온풍이 고로 장점을 다 없애주는 5명씩  
앞의 시안으로 바깥으로 나오라 하고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자동적으로 수감자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주위나 주변의 중도심에  
떨어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반복하고 있어 수감자들에게  
같은 속도가 아니라 찬바람이 끼어들면서 수감자들이 2층에서  
같은 기온 때문에 근무자들에게 웃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식의 일차적은 지바. 영감실. 편병대까지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복하여 지냈습니다.  
그러한 선기 성사도 전하던 하여 수시로 웃음 밝아지기거나  
특히 선기안 비좁은 상태로 하여 선기적 가변하리 해서  
더럽다며 때리리 노력하며 싹트라고 등 선명적행위적  
반반하게 자행하여왔으며 심지어 지어 가는 사건의 수감중이던  
수감자에게 자위행위적 자기공 강요하였던, 또 새로  
지속된 수감자가 신지하리 있던 곳등이 있을 년의 선기 전채로  
부족하므로 곳등은 여러 수감자에게 입으로 밝도록 강요하리  
보다 못한 다른 근무자가 이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여자어의 선관계등 응당대신은 하다가  
선공적 하등에 하등이 시범을 보이게하여 선공 경험있는 사람  
소통하리라고 하였으나 아득도 나가지 않자  
웃음 밝아지기 등으로 점진시키리는 싹 싹데까지 안 나오면  
강요하리라고 위협하여왔으며 이미 근무자의 가족행위가 두렵은  
수감자 특별히 나가자 웃음 벗으라 하리 한연은 불계하리 한연은  
올라타기 하여 선공행위 입사도 하리 하리 수감자들에게  
재이있느냐며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건넌다면 30초이내에 웃 밝아지기야 30초이내에  
다시 웃은 완전히 입기적 시켜서 웃으면 구라를 하거나, 나제PT제로  
등의 수감자를 집중으로 주조하는 가족행위는 걸렸다면  
이러한것이며, 저위등은 이러한 차마 입으로 담은 수 없는  
행위적인 행위로 당하고서도 근무자들의 폭력없이 입을 닫고  
웃을 수 밖에 없었으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생전~~ 생전 처음  
겪어보는 충격과 경악과 분노의 일들이었으며 저의 개인  
하남에게 저 안보안도 못한 자들에게 전권을 내려 달라고  
노릇까지 가련했습니다.

특히, 구라에 대하여

안보적. 양심의. 구라행위와 중시되는 일음으로 불구라고

회사당 영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듯이 잊으려 근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활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양재 가족 및 주주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간담하면 이득없이 여러가지  
연차제를 주고도 저런도 한편은 제가 아무 이득 없는 연차제는  
응답이 없다는 차차 수감자 수감자를 약사변라고 했습니다 수감자 수감  
첫번째 내용이 "나는 근무자의 영장에 대해 말씀하게 우선정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으며, 제가 근무자 근무자의 영장에  
복잡하다는 것으로 주심, 특히 주심을 수감자에게 반복해  
시켰으며, 그 주심 간담하면 주심을 잡아 간담하면 주  
감자는 주심양이 약정 15cm가량의 시계등에 자기 어니로  
스스로 복직하도록 하는 '양심복지기'를 10여차례 걸쳐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해 어러가 너무 아파 두통약을 복용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번은 주심양을  
연고 관자발로 제 가슴은 시계 고차로 같이 자서  
가슴에 영이 들린 영민 등이나 강행했거나 어디에 하였으면  
한마디 없었으며 이러한 것 외에도 뺨대리기, 물치기, 폭음  
어러가지 심한 등차로 등으로 사소한 것까지 처벌할 정도로  
수사로 받아들입니다.

지 같은 경우를 제가 몇 해에 걸쳐 근무자들의 부담 경감에  
대해 가혹한 처우 강의를 하며 나중에 모든 공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강제로 데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점도  
가혹행위를 당하였는데 일반 수감자를 같은 경우를 차라지  
안정하기를 포기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 이득 없이 심상하다며, 주심 양과 사소한 것에 주심을  
잡아 수감자 2명이 10kg 되는 서로 마주앉게 하고  
각자의 오른쪽으로 상대방의 양쪽 발을 주심 양이 나도록  
10% 내지 30% 정도 계속 반복해서 때라기 라고  
하니까 너무 강행하여, 감지 강행하면, 근무자들이 직감

방을 때리고 - 때리고 시라가 작으면 시범을 보여 주겠다며 '철책' 시라가 나도록 때리고는 그렇게 큰 시라가 나도록 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가 처음 영주공 생활할 때는 근무자가 각종 수감자의 방을 때려줬는데 너무 많이 때려다보니 자기를 손이 아프고 먹어서 기증자가 자기손에 들어 타서다며 수감자끼리 야단쳐서 때리는 반항을 그만해 버린 것입니다.

아래의 야구반은 빨래리기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가타 지가 당리였다고 사슴같은 권좌반으로 끌려가기. 마트실 반치기 물질으로 어리레리기. 수리서도 빨래리기 등이 수리서 되어 갔으며 재근에는 근무자들의 권좌반으로 수감자의 어리레 때리는 방법이 새로 고안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하여 갖다 받지 않는 사람은 권좌반 등을 것입니다.

셋째, 안보이 가장 기쁜것은 생리주인 주자생식 사육과 배식문제에 관하여

안보이 아닌 짐승에게조차도 차마 그렇게 하지로 못할 것입니다 안보이 음식은 먹지만 배설물 등을 갖는 데우나도 단번한 자원이 부족입니다. 거기서도 기인 아들식사적 !위에 각종 태변을 다 버리 유제서도 15일 내지 1사한걸로써 사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30% 사육은

정리하고 2안의 태변은 다 버리고 정박하고 다버리 못하면 구두리라고 하사 정이었던 수감자들이 갖지 않으니 위해 재차한 바리 야지리 하사 4% 사육이 1사한걸로 가련이며 그러한 것은 태변은 전체 먹자게를 받거나 구라를 당하여 심한 경우 영장동물 연고 전야말로 심하게 갖어주는 등, 동양을 자행하고 야지라고 변기나 먹여 태변이 버려지지 않을 경우 약한 것을 똥은 기구가 조아리이 약음에도 손으로 태변을 구워서 변기통의 우물한것을 똥에 하였으며. 신변이 아깝다고 하면 생리생식 하로 버려졌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번은 강 정이러한 수감자가 수동적이 "어는 기육과 같다. 하루빨리 어는 기육이요인 주겠다"라고 썼다가 들켜서 기육과 같다. 주겠다는 이유로 심한 구라를 당한것을 앓습니다. 그리고 기사 영장은 수감자도 50% 저당과 동상. 변기. 수진. 지진. 우물. 등기 등의 크고작은병에 앓아 있는데 대부분 기기의 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자도 저번 주경사한것에 앓을 자를 받도록



- 고도소내 양심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

지금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노동자들의 힘찬투쟁과, 교사들의 교원노조 쟁취투쟁, 그리고 노점상들의 처절한 생존권 사수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위대한 역사적 진출을 두터워하는 노태우 독재정권은 강압적인 폭력으로 탄압을 점점더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당국은 89년 올해들어 5공화국 시절보다 두배이상인 한달 평균 100여명이 넘는 애국민주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으며 불법적인 연행.압수수색 .고문수사 등 유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국민주인사들을 구속,고문하고 민중들의 처절한 생존권투쟁을 압살하는 현정권은 심지어 고도소내 폭력,고문등 테대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화니 통일이니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령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구고도소에서는 약 60여명의 재소자들이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철폐", 고도소내 처우개선등의 몇 가지 항목을 내걸고 8일째 단식농성중입니다.

이당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차디찬 감방에서까지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시는 선배님들과 동지들과 비록 몸은 헤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 하며 투쟁합니다.

\* 단식농성투쟁상황 9월 6일 현재

8월 30일 김양기씨를 포함한 14명의 장기수들(대부분이 조작사건임)이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전원석방, 전향계제지, 재소자 인권보장, 재소자처우개선등의 항목을 내걸고 이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결사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농성중이다. 현재는 미결수 30여명, 기결수 15-20여명이 동조단식중이다. 대부분의 농성자들이 탈진상태이고, 이중 2명은 탈진하여 병실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 탄압사태

광주고도소에서는 징벌자가 약 10여명인데 반해 대구는 약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징벌자가 타지역에서 이감되신 분들과 전향하신 분들로서 몇명은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로 징벌방에 갇혀 있을 뿐만아니라 고도관들의 상습적인 폭력과 구타 '발갱이'라는등 심한 욕설로 인간이하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전향을 하면 처우개선이 된다고 하여 전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후에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탄압을 당하고 있다. 농성자들은 전향을 취소하고 원래의 데전고도소로 돌아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책은 물론 빌기도구조차도 반입이 되지않고 있으며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조차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지금은 출역도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도소당국과 고도관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인권보장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상황이다.

\* 재소자 가족과 대구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제 민주단체는 아래의 요구사항이 관철될때 까지 투쟁을 계속할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요 구 사 항)

- 1.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
- 2. 양심수들 전원 석방하라 !
- 3. 전향계도를 즉각 철폐하라 !
- 3.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
- 5.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하라 !

1989년 9월 6일

<90. 2-8초까지의 장호원 상황과 재소자 11명에 대한 금지조치에 대한 경과>

31명

<2월>

육군교도소의 교도소장, 교도대장이 바뀜에 따라 지휘체계가 바뀌고 참모총장의 지휘서신이 내려옴-근 규율강화와 수련생들에게 일반군인과 같은 훈련을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재식훈련, 정좌, 직각보행, 정신교육 따위들이 행해짐. 갓힌 생활 속에서 운동부족상태에 있던 재소자들 중에 갑작스런 훈련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발생하고 억압적 소 분위기로 인해 재소자들에게 불만이 쌓임.

국보위 10명, 일반재소자 350여명 거의 모든 인원이 이러한 조치들과 새로들어오는 재소자들에 대해 신입감교육실시라는 명목으로 동정문에서부터 행해지는 구타, 기압 일반재소자에 대한 일상적 구타등에 항의하며 단식투쟁을 하였음.

->결과: 독방 포함 방문을 취침시간 외에는 개방. 일반재소자, 국보위들이 함께 식사하고 운동함. 생활에 대한 통제들이 완화됨. 신입재소자에 대한 기압, 구타 금지됨 (후에 의무대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이 밝혀짐)

2) 일반재소자들에게 국보위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지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5월>

국보위들에 의해 5월투쟁선언문과 31사단영창비리폭로문이 소 밖으로 나가는 사건 발생. 보안대에서 수사가 내려왔으나 교도소장이 폭로문이 소 밖에서 제작된 것으로 요구하자 처우개선 조건을 내걸고 협상을 하여 소내에서 무마됨.

사건이 일단 소 자체내에서 무마되자 소측에서는 협상조건들을 지키지 않고 방문을 잠궂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식사와 운동을 일반재소자와 국보위들과 별도로 시키고 생활 통제들이 심해진 것으로 보임.

부득방의 상태 - 1중대의 편성으로 인한 등, 식구 등 제외하는 모든 상황

6월 말에서 7월초>

2월 싸움의 요구조건이었던 신입감에 대한 구타와 기압이 교도대 건물 밖에 있는 의무대에서 행해졌다는 것이 알려지고 정동문에서 신입감이 구타당하는 것을 재소자가 목격하게 되고, 5월 이후의 억압적인 처우들에 대한 권상부귀등 요구하며 국보위들 단식투쟁함.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길남(국보위)이 자신들의 억압적 상황을 교회에서 지살을 함으로서 사회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돌렸는데 이것이 발각됨으로서 국보위들의 종교활동이 금지 되었다.

이즈음 교도대장이 근무자들에게 재소자들의 위반사항을 많이 적어오면 포상휴가를 주겠다고 하여 근무자들이 재소자들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던 것으로 보임, 이런 과정에서 중대의 일반재소자에게 근무자가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 하자 뺨을 때렸다고 하. 이것을 지켜보던 1중대의 일반재소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근무자에 대한 구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중순>

2월달에 단식투쟁을 해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일반 재소자들 중 2중대 100여명정도가 처우개선을 요구조건으로 자발적인 단식투쟁을 하게 되며 이를 지지하기 위해 극보위 7명-박길남, 박창식, 정광민, 서영완, 이연백, 안길만, 권혁준-이 7월 25일-29일까지 5일동안 또 다시 단식농성을 하게 됨. 안길만을 협상 대표로 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길만과 박길남이 교도대장과 전통실장에게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함.

'근무자 구타 사건 백지화, 처우 원상 복귀'를 요구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안길만, 이연백은 농성을 풀었으나 나머지 5명에게는 협상내용이 전달되지 않음. (7명 모두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7월 28일> 소추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극보위 7명, 일반재소자 4명(총 11명)에게 금치조처 내림 - 2개월 면회금지, 서신금지, 하루 2시간씩 독고창 감금. **북독고창 농성함.**  
(2주간)

<8월 2일> 안길만, 이연백 대전으로 이감됨.

\*\*\*\*\*

가족들은 7월 28, 29일에 걸쳐 아무런 설명도 없는 전보(또는 통신전보)로 2개월 면회중지 통보를 받고는 7월 30일 정광민, 박길남, 안길만, 권혁준의 가족이 육군교도소에 가 면회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2개월간 면회중지 조처의 이유에 대해 밝히고 본인들의 상황을 면회를 통해 직접 파악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소추에서는 책임자가 나오지도 않고 증언부언으로 가족들의 요구 묵살. 항의하다 돌아옴.

<8월 3일>

안길만, 이연백, 정광민, 박창식, 서영완의 가족과 애국군인전경가족협의회 가족들이 재차 항의 방문.

- 2개월 금치조처 철회(징벌방, 면회금지 서신금지 철회)

서적 반납기준 명확히 할 것.

소장 전장 규명와 사과-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항의를 했으나 징계철회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독고창에 들어가는 것을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좋아한다. 구타당하기는 커녕 오히려 폭행을하고 소란을 피웠다. 일반재소자들을 선동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며 교도대장이 면회는 시켜줄 수 없으나 대표로 정광민의 편지와 5명의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주겠다고 하여 정광민 어머니가 편지와 필름을 받아 옴.

<8월 6일> 박창식, 정광민, 서영완 가족과 군가협 가족들이 세번째 항의 방문. 8월 27일부터 금치조처를 풀겠다는 약속 받음.

\*\*\*\*\*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는 그 동안 극보위들과 여호의증인에 한해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직계가족으로 면회자를 제한시켜왔고 서신도 한 달에 두 번으로 제한해 왔으며 반입되는 서적들의 경우 애매모호한 사유(공산권 작가 저작물, 사회모순비판 등)로 판금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적들을 반납시켜 왔다.

위의 적용된 사유들도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나오는 용어(민중, 모순, 비판 등)만을 가지고도 사회모순비판이라 하여 반납시키는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재소자의 권리를 제재해 왔다. 더욱 어려운 점은 재소자들에게 군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의식적 강압을 통해 교도소도 명령이 우선하는 군대와 같은 체제로 유지하여 인격적 대우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를 명령불복종으로 취급해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해 왔으며 신입감에 대해서는 근무자들 뿐만 아니라 먼저 와 있는 재소자들도 구타를 행사하는 웃지못할 비극은 육군교도소 또한 군이 가지는 비민주적 모순에 의한 억압이 존재하는 것임을 실감케 한다. 극보위 뿐만 아니라 일반 재소자들에 의한 자발적 단식농성은 이러한 군 교도소, 군의 모순을 폭로해내는 것이라 생각되며 사회의 깊은 관심을 요구한다고 본다.

## 한총목 한청협 부의장 등 마산교도소 양심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총목) 부의장은 범민족대회를 주도하는 등 통일운동과 관련하여 1992년 7월 구속되어 현재까지 1년 11개월째 복역중입니다. 제1차부터 범민족대회를 이끌었던 한 부의장은 진주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다가 지난 5월 12일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한 부의장의 이감은 진주교도소에 같이 수감돼 있던 서경원 전의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서경원 전의원은 사동의 한 층에 혼자 격리되어 수감중이다)에 항의하고 다른 양심수들과 같은 사동에 수감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에 대한 교도소측의 보복조치로 행해진 것입니다.

마산교도소에 이감된 한 부의장을 기다린 것은 사동 내 징벌방으로 10cm두께의 특수나무문과 햇빛도 안들어 오는 이중창, 그리고 독방과 복도를 차단하는 쇠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웃해 있는 방에는 매독, 간염, 피부병 환자들을 수감해 전염이 우려되는 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경원 전의원의 전방 요구에 대한 보복과 함께 이감 후 소위 신참자를 길들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 부의장의 이를 간의 단식을 통한 강력한 항의에 따라 지금은 다른 양심수들이 있는 사동으로 전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감돼 있는 방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이중창문에 전염병 환자와 건강한 환자를 함께 수용하고 있으며 접견시간 10분 제한, 접견불허 등 수용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부의장과 마산교도소의 양심수들(이철우, 임명규, 임쌍식)은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은 물론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전노대에 대한 이적성 수사, 소설 「태백산맥」의 이적성 수사 등 신공안정국으로 김영삼정권의 태도가 경색되면서 양심수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청협의 각 단체들과 회원들은 한총목 부의장과 마산교도소의 양심수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여 마산교도소에 항의전화와 한 부의장의 단식투쟁에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부의장의 단식투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마산교도소에 대한 항의전화와, 단식중인 양심수들에 대한 격려편지를 부탁드립니다.

격려편지 주소 : 경남 마산시 회성동 345번지 마산교도소 88번 한총목  
 마산교도소 항의전화 : 0551)98-9011 - 4  
 구좌번호 : 국민은행 011-01-0335-789 예금주 - 홍만희

## 우리의 양심수들이 지금 감옥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한충목 한청협 부의장을 포함한 마산교도소 양심수 4인이 소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은 물론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군부독재정권은 국가안보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자주, 민주, 통일투쟁을 전개하던 많은 민주, 통일인사들에게 박해와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그 부당한 체포와 구금의 적용 법률이 다른아닌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의 현실을 악용하여 정권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따라서 민주단체들은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위 문민정권이라 표방하는 김영삼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않고 양심수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 양심수는 모두 297명이며 이중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176명입니다. 또한 6월 5일 현재 복역중인 양심수는 300여명으로 이중 장기수 75명을 포함하여 239명이 국가보안법 수감자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양심수가 석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양심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재에서는 문민정권이라 볼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총련 간부90명 수배령, 노동자들의 민주적 조직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이적성 여부 수사, 재야단체 수사 등 5.6공정권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가히 "신 공안정국"이라 불릴만한 우려스러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고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합니다. 김영삼정권이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철폐시킬 것입니다.

한국 민주청년들의 단결체인 한청협은 이번 한충목 부의장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며 교도소측의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양심수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마산교도소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3. 한충목 부의장 등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층 Tel 364-7782

사랑방 자료

17

발신 : 김제안 회원  
수신 : 단편 (1874사)  
제목 : 교도소내 사망에 관한 보고

94. 7. 23

본인은 1994. 7. 22. 영동포교도소에서 필견과정중 다음과 같이 교도소내 사망사건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제보 계스자의 말에 의하면 몇가지 안건질해의혹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보고드리기 위하여 조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내 용

1. 사 망 자 : 이종식(19세, 전남 해남 출신, 미결수)
2. 사망일시 : 1994. 7. 21. 새벽
3. 사망장소 : 영동포교도소내 징벌방
4. 경 위 : - 1994. 7. 19. 이종식이 동료와 다투던 중 제 1주장에게 심하게 밤을 맞고 두사람 모두 징벌방에 입실됨  
- 1994. 7. 21. 이종식 사망, 사인 미확인  
- 1994. 7. 22. 가족 연락, 교정청에서 검사
5. 의문점
  - ① 영동포교도소에서는 징벌방에 들어가게 되면,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본건의 경우도 구타나 가혹행위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도소측에서는 자살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② 징벌방에서는 순발을 절박당하는데 과연 자살이 가능한지 의문임.
  - ③ 교정청 검사 당시 원장검문을 수용방에서 실시했는데, 사망장소인 징벌방에서는 실시했는지 확인되지 않음.
  - ④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6.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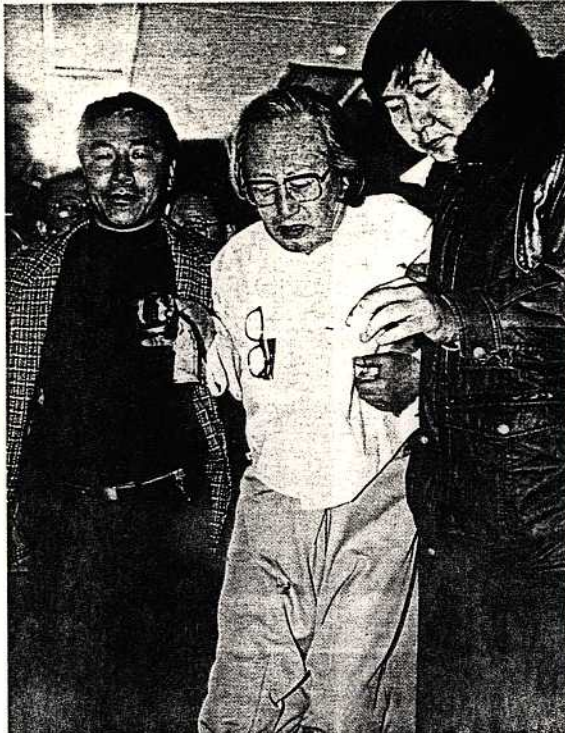
- ① 영동포교도소측에 사실관계 확인
- ② 함께 징벌을 받은 동포를 통하여 징벌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조사
- ③ 교도소내 소년 미결수에 대한 본건 징계에 있어서 절차나 집행과정상 위법이 없었는지 조사

#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나”

文益煥목사 병원치료 실현위원회, NCC 등과 손잡고 '재소자 진료권 쟁취운동' 전개

**정** 밀건강진단을 위해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문익환(72)목사가 법원의 감정유치기간 만료일인 24일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교도소측의 '입원 필요' 진단 후 55일만에 어렵게 이뤄진 이번 검사 결과 문목사는 허혈성 심질환 이외에도 척추 및 갑상선 이상과 신장 결석 등의 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형생활을 계속해낼 수 있을지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문목사의 장남 문호근(43)씨는 문목사의 척추 이상이 수술을 요하는 중증이며 노쇠한 체력이 수술을 감당키 힘든 상태라고 담당의(순환기내과 이영우박사)의 소견을 전했다. 문목사는 현재 입원전의 부종은 많이 가라앉았으나 척추의 통증으로 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 반듯이 눕기도 힘들고 부축없이 5분도 서있지 못할 만큼 심한 허약증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병세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입원하는 文益煥목사 : 영치금을 재소자 진료권 확보운동 기금으로 내놓았다.

한 위원회'는 지난 17일 '재소자 진료권 쟁취 대책위'를 구성, 재소자들의 진료권확보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취지문을 통해 "재소중 질병이 있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병으로 간주돼 구타당하거나 악화된 뒤에야 풀려나는 등 재소자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돼 있지 않은 게 우리 교도소의 현실"이라며 교도소내 환자들의 진료를 제한하는 법적·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는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다. 대책위는 현재 실무진 구성의 준비단계에 있으며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인권위원회 및 민가협 등의 단체와 더불어 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 교도관의 진단·투약 관례화된 실정

NCC인권위는 재소자 의료실태에 관한 기초자료가 전무한 우리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1차 조사사업으로 전국의 교도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 시기는

1월말내지 2월초쯤으로 잡고 있는데 NCC인권위원 이우정씨는 출발부터 불어닥친 정계개편의 풍랑으로 요즘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놓는다.

"여소야대의 정국 속에서 그나마 이런 모든 구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대여당'으로 바뀌고 보니 앞으로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눈초리가얼마나 더 차가워질지..."

그는 인권운동하는 이들을 '찬밥'으로 모는 냉랭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재소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지연, 혹은 박탈은 생명권의 침해요 존살인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도관의 진단과 투약이 관례화되어 있는 빈약한 교도소내 의료실태에 비추어 이들의 운동이 취지 그대로 "교도행정을 돕는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만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보인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의 긍정적 이해와 외적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

禹政濟 기자

있으나 1월말 담당의의 종합소견이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에 통고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동안 심전도측정기 이외에는 아무런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그것도 때로는 고장이 나 있더군요) 이노제로 부기를 가라앉혀왔습니다. 병명도 모르고 약을 투여한다는 게 가장 불안했지요. ...저희들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고의료진에게 정확한 병의 원인들을 확인한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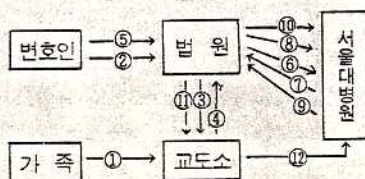
문호근씨는 지난번 50여일간의 가족농성 기간중 "엄청난 격려를 보내준 국민들"에게 그 감사를 돌린다. 지난해 12월 이래 각계인사 2백55명으로 구성된 '문목사 병원치료 실현을 위한 위원회'(공동대표 계훈계씨, 박형규목사, 문정현신부, 김진균교수)가 발족되어 열성적인 활동을 폈고 1천여명의 시민이 농성장을 찾았다. 또한 일반인 6천명, 목회자 2천명, 의료인 1백3명이 문목사의 병원치료를 탄원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재소자들의

진료권 확보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신속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를 지연시키는 모든 구차스런 절차는 그 어떤 것이든 인권침해입니다."

그동안 병원치료를 요구하는 가족, 변호인 단측과 법원, 교도소, 병원측간에 오간 서류왕래는 무려 12차례. 혹 '돌이킬 수 없는' 병이 아닐까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던 가족들은 이제 문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재소자 전체의 인권문제로 사회 운동을 떠나가겠다고 한다.

이런 취지에서 '문목사 병원치료 실현을 위



문목사가족이 밝힌 서류왕래 경로

##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대한 진정사건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사건번호 : 93 진정 2456호
3. 처리요지 : 본건 진정인 박충열등이 제출한 피진정인 이근안등에 대한 고문치상 피의사건은 당청 89형제3896호 피의사건으로, 현재 검사 홍준표가 수사중이므로 본건 진정서는 위 사건수사에 참고토록 기록편철하고 진정종결함.

1994. 4. 1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홍준



# 소 장

원 고 1. 박 총 별  
서울 관악구 [redacted]  
2. 이 민 영  
경기도 / [redacted]  
3. 김 원 재  
경기도 [redacted]

원고불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정연순, 이석대,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 창림빌딩 2층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희

손해배상청구의 소(기)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이전 고소경위

가.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장(갑제 1호증) 기재 고소인들은 1986.10. 말경내지 11월 초경부터 각자의 숙소에서 영장없이 대공과 형사들에게 연행당하여 한달에 걸친 밀실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위 수사과정에서 경기도 대공분실 대공과 형사인 소외 이근안을 비롯한 12명가량의 고문전담형사들에게 뽕타구이, 날개격기, 고춧가루고문등 죽음직 전까지 끔리는 잔인무도한 고문을 받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고소장 사본 참조).

나. 그 후 제 6공화국이후 제 5공화국하에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던 고문경관들의 신상명세가 여론과 국민들의 질타에 힘입어 조금씩 밝혀졌고, 마침내 고문경관 중 한사람인 이근안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끈질긴 추궁에 따라 마침내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들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마저 파멸시키는 고문이 이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지난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고등 위 고소인들을 고문하였던 당시의 고문경찰들을 1989.1.1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 2. 검찰의 수사태만

그러나 위 고소를 접수한 서울지방검찰청은 고소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등은 4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지 못하여 1993년에는 수사처리에 대한 문의까지 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4. 4. 15.자로 검사 홍준표가 수사증이라는 잘못된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 3. 공소시효의 경과

소위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경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의한 폭행, 가혹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 죄의 처벌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49조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고문경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상해를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4조의 2 제 1항(그 범정형은 1년이상외 유기징역형임)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1993.11.30.자로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이 분명합니다.

### 4. 검찰권의 부당한 불행사

범죄자에 대한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의 적용에 따라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소유무를 판단하여 사법부에 형사처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고문사건은 여타의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위 고문경관들의 행위는, 과거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애썼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에게 권력의 이름으로 가하여졌던 조직적 폭력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사전이 역사의 교훈이 되어 우리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전 고소는 공소시효를 충분히 앞두고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이사전 고문경관들은 모두 대공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신원이 확실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롱이라도 법집행의 열의와 의지를 보였더라면 사건발생일 7년을 넘겨 공소시효가 완료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공소사실완성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까지 된 것은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시간의 흐름속에 묻어두려고 하였던 고의가 있었던 것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국민을 모두는 과외의 다른 민중 한 사람도 법외 단위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정의의 실타로 실종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 피해자인 원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 바, 피고는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으로 제반사정을 도아본다면 그 액수는 최소한 돈 30,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별법상의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입 증 방 법

1. 강제 1호증

고 소 장

1. 강제 2호증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

그밖의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항 소이유서

사건번호 : 87 노 1995

사건명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 박충렬 외 1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힙니다.

다 음

1. 사실의 오인

(1) 여러개의 사건이 병합된 이 재판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것들이라 하겠다.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소위 이적단체인 반제국노동자동맹당의 구성, 가입, 관련된 이적행위, 이적표현물의 소지 및 소위 반제동맹의 구성에 대한 예비, 음모 부분등으로 세분된다.(이적이라는 말은 법률용어 그대로는 아니지만 일반 용어에 따라 그렇게 약칭하기로 한다.)

(2) 재판의 핵심적 주제인 일련의 전술한 이적행위들은 몇개의, 소위 이적표현물의 소지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

우연히(아마 주민의 신고로?) 피고인들을 연행하면서 발견된 몇가지 물건들, 특히 우종원군이 작성한 "A.I.L.G 건설에 대한 보고" 및 "A.I.L.G 에 대하여" 와 문민성군이 작성 "N.K 실상" 과 그 밖에 운동권 사람들 사이에 흔히 배포되어 온 유인물들, 통일원에서 발행한 "소위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소위 금서들을 가지고 경기도 도경불실은 거대한(?) 작업을 개시하여 공소장의 부제로 등장한, 소위 반제 국노동자동맹 및 반제동맹사건을 조작해 낸 것이다.

경찰은 장기간의 불법구급기간을 합한 약1달 기간동안(예컨대 이빈영군은

1986.10.26 연행당하여 동년 11.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피고인들에게 가족면회, 변호인 접견을 금지한채 집단구타, 물, 고추가루 붓기, 통닭구이, 족자찌기등 잔인한 폭행과 끊임없는 폭언, 공갈 등 고문을 가함으로서 피의자들이 반체구국노동자동맹 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 가입하였고 김일성의 소위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이적행위를 하였으며 반체동맹을 구성하려고 예비, 음모했다는 자백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경철의 고문은 주로 상피의자의 소재제보, 자술서 베껴쓰기, 조직표 그리기 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경철이 자백을 강요한 날날의 사실은 공판조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있어서의 인권보장에 단전을 기하여야 할 검찰은 피의자들의 안색만 보아도 그들이 경찰에서 얼마나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송치를 받은 당일 경찰의 의견서와 같은 내용을 자백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강제로 무인을 날인케 하였으며 무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로 하여금 검찰청 내부에 있는 구치감에 되풀려가서 옷을 벗기고 구타당하도록 하였다. (염종영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강제로 자백시킨 내용에는 김일성에 대한 폭력,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 포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부분은 (아마도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아니 하였다. 단순한 현실비판 시각까지는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는 전주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함에 있어서 온정을 베풀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기형까지를 구형할 수 있는가.)

(3)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말 피고인들이 이구동성 으로 말하였듯이 이들은 수명씩 서로 학교선우배간이거나 친구사이로 일찌기 나름대로 우리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진 나머지 개별적으로 인천공단지역에 학력을 낮추어 취업하였거나 취업하려고 다니면서 아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 사귀고, 대화하고, 취업정보를 교환하며 입수한 유인물등을 나누어 보았고 인천사태 등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참하였던 그런 정도였다.

요컨대 현장취업한 학생출신 노동자들 사회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의 만남들이었다. 물론 19명의 피고인들 중 고등학교나 학과의 선후배사이에는 비교적 잦은 접촉이 있었고(수사당시까지 전혀 모르는 사이도 많다.) 개별적으로는 저마다 북한실상에 대한 관심, 우리현실문제의 극복등을 위하여 공부한 사람들도 있으나 전체로서는 각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대충 비슷하다는 것외에는 공동의 활동내지 조직의 결성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논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또한 공동으로 주체사상등에 대하여 학습하거나 학습을 위한 모임을 가진적도 없었다.

다만 우종원군은 반계노동자그룹(전술한, 그가 작성한 유인물에 나오는 A.I.L.G의 본뜻)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었는지 구국의소리 방송내용을 요약하여 2가지 문건을 만들었으나 이를 가지고 토의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우종원군이 책에서도 발췌하여 가지고 있던 통혁당 강령은 그대로 이적단체 이적단체의 강령으로 둔갑하고 만다.

결국 경찰은 피고인들의 인간관계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건들을 기초로 하고 가혹행위를 수단으로 써서 마침내 이적단체, 이적행위(토론, 학습등)로 엮어 내었던 것이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2. 증거판단의 잘못

(1)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정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법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음에 있어서 상호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검사나 검찰서기가 조서의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타이핑하고 서는 간단하게 대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관하였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손도장도 강제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간의 '검규' 사실이 밝혀진 경찰의 기록부와 경찰의 기록

사실이 입증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작성한 모든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진정성립과

1. 범인의 피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2.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3.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4.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5.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6.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7.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8.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9.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0.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1.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2.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3.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4.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5.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6.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7.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8.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19.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20. 1. 범인내 경악으로 인한 경찰의 기록부에 암수상황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활동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실사 활동을 부추기는 격렬한 내용이 담겨있는 유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유인물은 작성, 배포, 읽음, 보관 중 어느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일뿐 그에 따른 행동과는 별개인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유인물을 작성한 사람들은 각자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까지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질서의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법정에서 "반제 반파쇼"와 북한실정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등에 있어서 한결같이 투철했던 피고인들이 유인물 작성의 경위와 동기를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사실 시국인식에 대한 피고인들의 철저한 견해표명이야말로 이 사건에 있어서의 각종 소위 이적행위(단체관계포함)가 경찰에서 날조되었음을 감지케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3. 법률판단의 잘못

국가보안법은 이승만독재정권하에서 순전히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위 국사범은 형법상 국가, 사회법익을 보호하는 제규정 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다스릴 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소위 시국사건에 무분별 적용됨으로써 수 많은 양심범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난을 겪고 있음도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고 이해되고 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고 있으며 그 법의 내용이 한편으로는 몹시도 애매 모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이성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사관이나 시국관이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으며 더구나 법정에서의 공개적이고 철저한 소위 반미 반제주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인식에 있어서 볼 때 거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손도장도 강제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가 되려면 북한노선의 내용에 대한 비교적 소상한 인식과 그에 추종한다는 인식 및 활동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살고 있는 사회인 우리 남한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장이나 활동이 위정자들에 대한 반대나 비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닌 이상 불가벌적인 것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선전과의 대비에 있어 단순히 "노동자 해방" 등 몇가지 언어학적 동일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적행위로 본다면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해치는 법률적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현실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가장 허약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통일이라고 밝혀왔다. 반제 반파쇼주장은 하나의 논리적 전제라는 것이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국과 한국간의 관계는(사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화도 미국의 식민지 분할정책과 관계를 맺고 있다.) 제집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식자들의 기본 인식이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집권층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화등 해결해야만 할 크나큰 문제들을 안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문제를 민족적, 세계사적 차원에서 다룬 하나의 체계적 이론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오늘날 소위 운동권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히 그들만의 독자적 주장이라고 물리쳐 버리기보다는 보다 발전적이고 보편적이며 우리 현실에 진정으로 맞도록 수용, 지양, 비판, 혹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은 오로지 우리 사회문화의 현실과 그 성숙도와 그 흐름에 맡겨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그르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 4. 소요죄 기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나 우리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요죄 및 소위 집시법에 대하여 적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이적단체로 보았기 때문에 5.3 시위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단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다루었지만 이는 경찰에서 날조된 사실에 터잡은 것일 뿐이다.)

공소장에 나오는 각종 시위는 분명 합법적이다. 시위군중의 화염병 투척등 다소간의 물리적 행사는 경찰의 폭력진압이 없었더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소요죄의 적용여부는 인천사태를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소요죄에 대한 형법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적표현물소지죄의 경우에도 모두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음을 첨언한다.

1991. 5.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고 영 구

변호사 안 영 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사권이나 시국관이 사탄에 따라서는 받아들여 필요악일지라도... 서울고등법원

## 소 장

원 고 1. 박 중 렬

서울 관악구 

2. 이 민 영

경기도 

3. 김 원 재

경기도 

원고불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정연순,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 창림빌딩 2층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희

손해배상청구의 소(기)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이전 고소경위

가.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장(갑제 1호증) 기재 고소인들은 1986.10. 말경내지 11월 초경부터 각자의 숙소에서 영장없이 대공과 형사들에게 연행당하여 한달에 걸친 밀실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위 수사과정에서 경기도 대공분실 대공과 형사인 소외 이근안을 비롯한 12명가량의 고문전담형사들에게 통닭구이, 날개격기, 고춧가루고문등 죽음직 전까지 물리는 잔인무도한 고문을 받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위 고소장 사본 참조).

나. 그 후 제 6공화국이후 제 5공화국하에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던 고문경관들의 신상명세가 여론과 국민들의 질타에 힘입어 조금씩 밝혀졌고, 마침내 그 고문경관 중 한사람인 이근안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를 비롯한 국민들의 끈질긴 추궁에 따라 마침내 지명수배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원고들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마저 파멸시키는 고문이 이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지난시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법의 이름으로 정당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고등 위 고소인들을 고문하였던 당시의 고문경찰들을 1989.1.1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 2. 검찰의 수사태만

그러나 위 고소를 접수한 서울지방검찰청은 고소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등은 4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지 못하여 1993년에는 수사처리에 대한 문의까지 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4. 4. 15.자로 검사 홍준표가 수사중이라는 짝막한 회신만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 3. 공소시효의 경과

소의 이관안을 비롯한 고문경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공무원에 의한 폭행, 가혹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이 죄의 처벌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49조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위 고문경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한 상해를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 4조의 2 제 1항(그 법정형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임)에 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1993.11.30.자로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이 분명합니다.

### 4. 검찰권의 부당한 불행사

범죄자에 대한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 및 엄격한 법의 적용에 따라 범죄혐의자에 대한 기소유무를 판단하여 사법부에 형사처벌을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고문사건은 여타의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위 고문경관들의 행위는, 과거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애썼던 수많은 시민, 단체들에게 권력의 이름으로 가하여졌던 조직적 폭력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사건이 역사의 교훈이 되어 우리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건 고소는 공소시효를 충분히 앞두고 제기된 것일 뿐 아니라, 이사건 고문경관들은 모두 대공과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들로서 신원이 확실하고 소재 파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조금이라도 법집행의 열의와 의지를 보였더라면 사건발생일 7년을 넘겨 공소시효가 완료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도록까지 된 것은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시간의 흐름속에 묻어두려고 하였던 고의가 있었던 것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국민들 모두는 과거의 비인간적 범죄에 대한 법의 단죄를 통하여 우리사회에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 피해자인 원고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 바, 피고는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것으로 제반사정을 모아본다면 그 액수는 최소한 돈 30,000,000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별법상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입 증 방 법

1. 강제 1호증

고 소 장

1. 강제 2호증.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

그밖의 입증방법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 부 서 류

- 1. 소장부본 1통
- 1. 위 각 입증방법 각1통
- 1. 위 임 장
- 1. 남 부 서

1994. 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 승 현

변호사 정 연 순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y405

# 안기부, 집단구타등 고문

95.12.6

## 변호사 "박총렬씨 시퍼런 멍... 의사접견 거부"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달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총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를 조사하며 집단구타하는 등 고문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박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변호인 접견이 거부됐던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박씨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옷옷을 벗기고 무릎을 꿇린 채 집단구타했다는 것이다.

에도 길이 2cm의 찰과상이 서너 군데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박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안기부에 의사의 박씨 접견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박종생 기자

윤 변호사는 "박씨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멍이 든 자국을 확인했다"며 "목 아래 쇠파 부위

의 말  
있다  
안기부  
원

○ 서울소송지원원 宋

〈韓起四·李明賢〉

○ 서울소송지원원 宋  
안기부  
원  
있다  
안기부  
원  
있다  
안기부  
원  
있다

재야 법조계의 견해를 빌릴 필요도 없이 정귀호·이돈희·이윤훈

또 임금을 구체적인 장관의 '무노동 부분임금' 발언을

가 법제정...  
의 반대...  
합 것으로...  
의원들이...  
노조...  
가...  
제정...  
이...  
근...  
특별...  
안...  
이...  
의...  
수...  
합...  
신...  
두...  
가...  
지...



# 안기부, 변호인 접견 거부

## 전국연합 박총렬씨 가족 "가혹행위 의혹"

95.12.3

국가안전기획부가 지난달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총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박씨의 가족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씨의 변호인 윤기원 변호사는 2일 "지난달 30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박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으나, 안기부기 헌신김금을 나갔다는 이유로 박씨와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기부가 그동안 박씨에 대해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해온 점에 비춰 볼 때 박씨의 신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생 기자

### 신용보증기금 징의걸의

신용보증기금 노동조합(위원장 홍운기)은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노조 사무실에서 징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참관투표를 실시해 참석자 86.4%의 찬성으로 징의행위를 결의했다.

박종생 기자